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17 발의연월일: 2025. 1. 10.

발 의 자: 강대식 • 조지연 • 김상욱

강선영 • 유용원 • 고동진

김상훈 • 박준태 • 성일종

주호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정하고 행사 등의 사업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병역의무는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병역명문가, 사회복무요원 등 다양한 형태로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모든 이들을 포함하므로, 이들에 대한 명예를 선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정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는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 이려는 것임(안 제82조의6 신설).

법률 제 호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장에 제8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2조의6(병역이행자의 날) 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의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정한다.

② 국가는 병역이행자의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82조의6(병역이행자의 날) ①
	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의
	자긍심을 높이고 병역의무의
	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
	하여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
	병역이행자의 날로 정한다.
	② 국가는 병역이행자의 날에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	라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
	를 실시할 수 있다.